

2-1. 저소득층 어르신(70세이상) 건강효도비 지급

가족행복과 노인복지계 / 김정미 ☎ 610-4364

저소득 노인 건강효도비 추진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완료 하였으며(목표 진도율 50%), 대상자 선정하여 노인의 날 (10.2.)이전 지급 완료하였음

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3년 ~ 2026년 (매년 10월중, 연 1회)
- 지원대상 : 관내 7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
 - ▷ 지원기준일 현재 수영구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사업내용 : 1인당 건강효도비 100천원/연 지원
- 총사업비 : 1,660백만원(구비 1,660) *당초 사업비 : 1,460백만원(구비 1,460)

공약사업 추진사항

- 사업이행여부

추진여부				추진 공정률(%)
완료	이행 후 계속추진	정상추진	일부추진	2024. 6.30.현재
	○			100%

- 사업비 투자정도

(단위 : 백만원)

계획예산(총사업비)					투입(확보)예산				
계	국비	시비	구비	기타	계	국비	시비	구비	기타
1,660			1,660		440			440	

연도별 사업비 집행액					
계	2022	2023	2024	2025	2026
331		331			

□ 세부추진내용

○ 2022~2024년

- ▷ '22.12. : '23년 본예산 편성
- ▷ '22. 7.~'23. 3. :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
- ▷ '23. 8.~12. : 효도비 지급(3,308명, 330,800천원)
- ▷ '24. 6. :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협의 진행

□ 문제점 및 개선방안

○ 문제점(미흡한점)

- ▷ 행복이음 상 사회보장급여로 등록되지 않아 압류방지통장 사용자는 계좌입금 불가

○ 개선방안

- ▷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협의를 통해 압류방지통장 사용자도 계좌지급 할 수 있도록 진행 예정

□ 향후추진계획

- '24. 7.~ 8. :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협의
- '24. 9.~10. : '24년도 건강효도비 대상자 선정 및 지원